

## 【 4 】 의장 선거의 건

제의연월일 : 2006. 5. 8 .

제 의 자 : 의 장

### □ 제의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회 기 : 2006. 5. 9.
- 장 소 :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 투 표 방 법 설 명

양 주 시 의 회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제4대 양주시의회 제2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한 분씩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대로 가셔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안에는 기표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은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란 바깥으로  
기표한 경우와

그리고 2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하셨거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기표 시에는 반드시 후보자  
한 분에게 정확하게 기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유·무효표 판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읍면동 직제에 의한 선거구 순서대로  
하되 감표위원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모든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